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

도급인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수급인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 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.

제 1 조 【 총 칙 】						
1. 공 사 명 :						
2. 공사장소 :						
3. 공사면적 :	m²					
4. 공사기간						
1) 착 공 :	년	월	일			
2) 준 공 :	년	월	일(일)		
5. 도급금액 :	일금_			<u>원</u> 정(<u>₩</u>)	
공 급 가 액 :	일금			<u>원</u> 정(<u>₩</u>)	
부가가치세액 :	일금.			<u>원</u> 정(<u>₩</u>)	
6. 공사대금 지급방	·법					
1) 계약금: 계약	체결 시	』일금_		<u>원</u> 정(<u>₩</u>)	
2) 중도금:						
3) 잔 금 : 준공	완료 후	(년	월	일) 일금	<u>원</u> 정(<u>₩</u>	
7. 하자담보 책임기	간: !	년				
8. 하자보수 보증금	율:					
9. 지체상금율 :						

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과 별첨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계약일자: 2025년 월 일

주 소: 도 사업자등록번호: 급 이 주민등록번호: 대 표 자 : (인) 연 락 처 : 주 소: 수 사업자번호: 상 호: 인 대표자: (인) 연 락 처 :

제 2 조 【 보증인 】

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3 조 【 공사감독원 】

- 1. "갑"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(이하 '공사감독원'이라 한다)를 선임할 수 있다.
 - 1)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
 - 2)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
 - 3)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,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
 - 4)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"갑"이 위임하는 일
- 2. "갑"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"을"에게 통지하여 한다.
- 3. "을"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"갑"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조 【 현장대리인 】

- 1. "을"은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,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"을"을 대리한다.

제 5 조 【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】

"을"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설계도서(도면, 시방서, 공사내역서,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【선 금】

- 1. "갑"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"을"은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2.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.

제 7 조 【 재료의 검사 등 】

- 1.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에서 "갑"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"을"은 사용 전에 "갑"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"갑"과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2. "을"은 재료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.
- 3.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"갑"의 입회 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.
- 4.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"갑" 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.

제 8 조 【 지급재료와 대여품 】

- 1. 계약에 의하여 "갑"이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,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.
- 2. "을"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"갑"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.
- 3.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"을"은 "갑"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"갑"은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4. "을"은 "갑"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·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 야 하며.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5. "을"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"갑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9 조 【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】

- 1. "을"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때 "갑"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
- 2.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"을"에게 있다. 다만, 설계상의 하자 또는 "갑"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제10조【응급조치】

- 1. "을"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 시 이를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"갑"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"을"에게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3.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11조【공사기간의 연장】

- 1. "갑"이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의 사태등 "을"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"을"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2.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의 연장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【부적합한 공사】

- 1. "갑"은 "을"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2.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"갑"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"을"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
제13조【불가항력에 의한 손해】

- 1. "을"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2. "갑"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,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3.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.

제14조 【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】

- 1.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, 누락,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 계를 변경한다.
- 2.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
 - 1)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 - 2)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.
 - 3)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.

제15조【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】

- 1.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
-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, 물가변동이 있은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"갑"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 【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】

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 여 조정한다.

제17조【기성부분급】

- 1.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"을"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"갑"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2. "을"은 제1항의 검사 결과와 제5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 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갑"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.
- 3. "갑"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8조【준 공】

- 1. "을"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"갑"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"을"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2. "을"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3. "을"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, "갑"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9조【대금지급】

- 1. "을"은 "갑"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, 폐물, 가설물 등을 철거,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"갑"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2. "갑"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3. "갑"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0조【이행지체】

- 1. "을"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'지체상금'이라 한다)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, 기타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"갑"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.
- 3. "갑"은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.

제21조【하자담보】

- 1. "을"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'하 자보수보증금'이라 한다)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 - 1)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
 - 2) 보증보험 증권
- 2. "을"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"을"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. "을"이 "갑"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"갑"은 "을"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.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,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"을"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.
- 4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 다만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"갑"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.

제22조 【"갑"의 계약해제 등】

- 1. "갑"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) "을"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 - 2) "을"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백화 경우
 - 3) 기타 "을"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"을"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3. "을"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)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.
 - 2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 없이 "갑"에게 반환한다.

제23조 【"을"의 계약해제 등 】

- 1. "을"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)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
 - 2) "갑"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한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 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
 - 3) "갑"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 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
-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"갑"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4조【손해배상 등】

- 1.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"갑"과 "을"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.
- 2.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25조 【권리의무의 양도】

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. 다만,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6조【법령의 준수】

"갑"과 "을"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.

제27조【분쟁의 해결】

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.

제28조 【특약사항】

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